

박형준 / 5월+6월 / 기출GS / 3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62380	18	12.5	18	11.5	60	1	2.08%	5	48
565128	16	11	18.5	11	56.5	2	4.17%	4	
562188	15	11.5	18	11.5	56	3	6.25%	4	
562576	13.5	11.5	16	11.5	52.5	4	8.33%	5	
563199	14	12	16	10.5	52.5	4	8.33%	5	
565364	15.5	11	15	10	51.5	6	12.50%	4	
563195	11.5	10.5	17	12	51	7	14.58%	4	
565042	16	9.5	15	10	50.5	8	16.67%	4	
564844	15.5	12.5	16	5	49	9	18.75%	5	
562176	14.5	11	13.5	9.5	48.5	10	20.83%	4	
562320	14.5	10	14	9.5	48	11	22.92%	5	
563528	14	10	16	8	48	11	22.92%	4	
562403	14.5	10.5	13	9.5	47.5	13	27.08%	4	
562508	14	9.5	16	7.5	47	14	29.17%	5	
561602	14.5	9.5	14	8	46	15	31.25%	4	
563002	13.5	9	16.5	6.5	45.5	16	33.33%	5	
563029	12	8.5	17	8	45.5	16	33.33%	4	
562339	13	10	15.5	7	45.5	16	33.33%	5	
563443	13	9.5	15	8	45.5	16	33.33%	5	
565263	12	9.5	13.5	10	45	20	41.67%	3	
563423	13	10	14	7.5	44.5	21	43.75%	5	
565337	13.5	9.5	14.5	7	44.5	21	43.75%	4	
562578	13.5	10.5	14	6	44	23	47.92%	5	
563520	14	8	15	7	44	23	47.92%	4	
562397	10.5	10	17.5	5.5	43.5	25	52.08%	4	
562813	13	10	12.5	8	43.5	25	52.08%	4	
562350	13.5	10.5	13	5	42	27	56.25%	5	
562434	11.5	10.5	13.5	6.5	42	27	56.25%	5	
563344	13.5	7	13.5	8	42	27	56.25%	4	
562358	12.5	9.5	14	5.5	41.5	30	62.50%	5	
562227	13	7.5	12.5	8.5	41.5	30	62.50%	5	
562305	13	9.5	10.5	7	40	32	66.67%	5	
562924	13	8.5	12	6.5	40	32	66.67%	4	
565032	11.5	9	12.5	7	40	32	66.67%	5	
565351	8	9.5	15.5	7	40	32	66.67%	6	
563311	12.5	7	14	6	39.5	36	75.00%	5	
562189	10	10	14.5	4.5	39	37	77.08%	3	
562268	12.5	7.5	12	7	39	37	77.08%	4	
562408	5.5	12	15.5	3.5	36.5	39	81.25%	5	
562326	11.5	5.5	12.5	5.5	35	40	83.33%	4	
562342	12.5	7.5	11	4	35	40	83.33%	3	
565403	13.5	5.5	10.5	5.5	35	40	83.33%	4	
563441	12	8.5	10.5	3	34	43	89.58%	5	
562207	8	9.5	9.5	6	33	44	91.67%	4	
562354	11	4	11.5	4.5	31	45	93.75%	5	
564269	12	6.5	8.5	4	31	45	93.75%	4	
562783	10	5	9	6	30	47	97.92%	4	
562372	7	6	2.5	4.5	20	48	100.00%	5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3회/1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3회는 2022년 59회 기출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은 특발권, 특허권, 그리고 중복심판청구 관련 논점이 함께 엮인 문제였습니다. 논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으나, 답을 틀리거나, 답안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귀속을 토대로 출원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한 만큼, 발명의 권리귀속을 명확히 대목차로 제시한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대상으로 특발권을 포함시켰으므로, 해당 특발권 이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답을 틀린 답안이 일부 있었습니다.</p> <p>갑의 종업원의 발명이라는 점에서 직무발명을 두껍게 작성하신 답안도 일부 있었는데, 이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특발권을 갑이 승계받았다는 부분 하나만으로 직무 발명을 주논점으로 크게 작성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특발권이 아닌 특허권 권리귀속 토대로 침해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허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특허권 자체는 여전히 갑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는 답은 맞혔으나, 을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근거를 작성하신 경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p> <p>을에 대해서는 판례가 특허권 이전 계약의 효력으로 실시할 권리도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영업양도 관련 판례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을텐데, 이번 기회에 결론만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3) 설문 3

설문 3은 우선 심사관의 처분을 예상한 후, 이에 맞춰 알맞은 특허심판을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설문 1에서 무권리자 출원에 의해 거절결정되어야 하는데, 특허결정 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을 틀린 답안도 꽤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전 심판이 계속 중에 동일한 후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우선 일사부재리는 후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이 계속중이므로 주논점이 아니고, 따라서 중복심판청구가 주논점입니다. 대부분 잘 찾아주셨으나, 중복심판청구금지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후심판 심결 시 기준 전 심판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경우를 나눠 작성하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

3. 소결

앞서 말씀드렸듯 논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답안의 가독성과 사안 포섭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답이 틀릴 경우 답안 인상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면서도 어디서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며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일사부재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경우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1차 때부터 판례가 실시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이므로, 답안 작성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번호가 대뜸 나와 당황스러웠을 수 있으나, 뒤에 설명이 충분히 붙어 있어, 어느 판례를 말하는 건지 이해를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례의 현출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잘 현출해주셨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163조 단서 규정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각하심결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는 점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 역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두껍게 작성하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결

일사부재리의 경우 출제된 두가지 논점만 주의하시면 대부분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린 경우나, 전원합의체의 경우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원심의 판단들도 검토해보시며 판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은 특이발명 중에서도 A급으로 찍히는 부분이고 판례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던 만큼,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판례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과 함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단문문제로 이해하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판례들로만 답안을 작성하신 경우가 꽤 있었는데, 문제에서 발명 X가 특허를 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작성하라고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안을 아예 포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문헌 1, 2에 대한 사실관계도 주어져 있는만큼, 적절한 포섭이 필요했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지 꼼꼼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투여방법을 부가한 것만으로 곧바로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의약 투여방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약효 향상, 부작용 감소 등의 현저하거나 이질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발명 Y가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기 위한 논리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섭시에 구체적으로 발명 Y를 통해 부작용 감소, 약효 향상, 편의성 증진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3. 소결

의약용도발명 역시 논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친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례의 현출도와 사안포섭에서 답안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혹시라도 판례가 실시하는 바에 대한 오개념이 있으셨던 경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논점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상 자백은 민사소송법에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논점이긴 하나,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물었으므로, 판례와 함께 실제 자백이 가능했던 예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이 자백의 대상이고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만 적은 경우,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물은만큼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재판상 자백인지와, 자백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은 만큼, 대목차로 크게 나눠 작성해주신 경우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함께 을의 진술 내용과 갑의 감정신청 철회 사실 등을 들어 자백이라는 점을 이끌어주시면 됩니다.

자백 취소의 경우 민사소송법 상 자백 취소 요건을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주소설정이 안 되어있을 경우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백 취소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포섭 두껍게 작성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3. 소결

특허법과 상표법 모두 민사소송법과 맞닿는 부분이 존재하는만큼, 4번 문제처럼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 있으시다면 충분히 방어가 되고 목차 구성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18

문제-

1 실문(1)

1 "이 사건 발명"의 권리 귀속 문제 - 甲의 주장인

(1) 특 333 1항 후 의의 취기

강한 권리와 보상을 위해 발명자와 2 순제인에게
인출권은 각각 인정된다

(2) 사안의 정

이 사건의 발명 과정과 권력권장장이 발수 배신로 인한
최로 달게기 발명자는 甲의 주장으로 인하여 귀속된다.

2 甲의 "이 사건 발명" 권리승계 타당성 (각각)

(1) 甲과 甲의 주장원 계약 완성 (각각)

1) 특 373 1항 의의 취기

사적 권리 행사상 특권을 발수권 받은 권리로 순제권과

2) 사안의 정

~~甲과 甲의 주장원은 "이 사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권을 발수할 수 있는 권리로 대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2) 甲과 甲의 주장원 간의 권리 승계 타당성 (각각)

1) 특 383 1항 의의 취기

출권 권 승계 외 경우 출권은 대항 요건이다

2) 사안의 정

甲은 甲의 주장원으로 부터 계약이후 출권하지 않았

II 설문(2)

6

1 "이 사건 특허"의 권리 귀속 - 甲

(1) "이 사건 특허"의 ~~권~~ 계약 유효성 (각주)

1) 법 91조 1항 의미 취기

사실 가치 관행상 특허도 이권 가능 하다

2)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일부 영업 양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의 특허"를 영위하여 계약하므로 이권 귀속하다

(2) "이 사건 특허"의 권리 승계 여부 (소극)

1) 법 101조 1항 소 의미 취기

법복 안정성은 시제 이권 등록은 소극 발생 요건이다

2)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이 기술훈과 별개로 乙은 이권 등록 하지 않았으므로 승계인이 아니다

(3) 소결 - "이 사건 특허" 권리 귀속 甲

이권 등록이 없으므로 이사건 특허기 권리 귀속
주체는 甲이라고 할 수 있다.

2 乙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 하는지 여부 (소극)

(1) 乙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자 승인 여부 (소극)

乙은 이권 등록이 없기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의 침해가 인정 못한다

(2) 乙이 "이 사건 특허" 실시권 주장 거부 (각각)

1) 권위 이전 관련 배상제

특허권이 이전 계약으로 권위 이전을 하자고 하였
지만 이전 등록이 없는 경우 배상제도 계약
양도인에게 실시권을 인정 하있다

2) 검토 - 法 1183 1항 고위

특허 실시권도 등록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바.
양도인이 양도인에게 실시권 허락 행위로 불이 인정하다

3)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계약으로 인해 실시권이 설정 되었지만
본인으로 인해 기존 등록된 주장 거부하다.

(3) 乙이 甲에게 금반년 주장 거부 (각각)

1) 금반년 관련 배상제

특허권 권위 이전 관련 계약 성립 이후 이전 등록
없이 양도인이 양도인에게 특허권 행위로 모든 권은
행위로 금반년에 반환한다 보았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 특허권 관련 계약을 맺고 이에 기한
권위 행위로 금반년에 반환 하용되지 않으나

3 결론 - 乙의 "이 사건 특허" 실시권 배상제

乙은 실시권 내지 금반년 주장 거부하다



II 실문(3)

6

1 어떠한 특허심판 청구 해야 하나리 - 무효심판(1) 무효심판 의의 취리 - 法133조

공익상 하라 있는 특허로 무효 시키는 제도 이라

(2) 적부 - 法133조 1항 끝

法 33조 1항 본 기번리 특허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인 것과 심사만 안 제기가능하리

(3) 분안 - 法 133조 1항 2

출원인 특허 기번리 法33조 1항 본은 특허가

무효 판을 시키는 제도 이라

(4) 소절 - 인용심결 이상

갈려진 특허 결심에 대해 든 무효심판 청구

있고 法 35조 특허 권리 회복 가능하리

2 특허 심판권 조취(1) 선형 심판 관련 조취 - 인용 심결

이 제기한 무효 심판에 별다른 하라가
있는 이상 인용 심결 하여야 한리

(2) 후형 심판 관련 문제 - 중형 심판 (적부)1) 중형심판 의의 취리 - 法157조 1항. 민소법259조

심판 정례와 모순 병리를 위해 중형권 심판이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제도 이라

2) 모건

① 동일한 양수라자 ② 동일 실원이 개개미

③ 계속권할 때 레기 개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① C이 ② 甲 특허출원권 "이 사건 발명"에
개하여 특정권 발본기반을 ③ 다나 레기 개야한다.

4) 소결

C이 후행 심판을 통해 심판 개종한다

(3) 후행 심판 관련 권리 - 판결을 각하 심결

1) 선행 심판 계속 승인 경우 - 각하 심결

선행 심판시 계속 승인 경우 공통 심판
해당 시점 각하 심결 이 개종 한다.

2) 선행 심판 취하시 - 불판결

선행 심판 취하하는 경우 심판권을 후행 심판
에 대해 불판결 해야 한다.

3) 선행 심판 취하 - 불판결

일부 개리 리유가 안되고 후행 심판 불판결
이 필요해 보인다. **인용행위 특허 소멸**

3 결론 - 무효 심판 청구 및 후행 심판 각하 심결

무효 심판은 각하된 특허 제재 권한 후행
심판 공통 심판 각하 심결 요한다



12.5

~~문제-2~~ 문제-2

I 실문(1)

1 문제집 - 일사부대리 · 법 1633

(1) 법 1633 의의 취지

심판 명리나 모든 항리를 위해 본안 심결 확정
등일 심판 제기하기 불한다

(2) 제수제가 실현 취지

상징 수권기 큰일한 처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
을 추구하는 취지 심결권 보장등을 위한
3차 불이타 항리를 위함이다

(3) 요건

① 본안 심결 확정 이후 ② 등일 심판. ③ 큰일나심
④ 큰일 큰일로 제기해야 한다.

2 2009 후 2234 판결의 의미

(1) 어떤 9인 관판4점 임기 - 본안 심결 확정시

2009 후 2234는 본안 심결 확정시 관판시점이요

(2) 제수제

[큰일 제수제 문제집 2가리] 이 제가미 공공심결
을 용락 하고, 제판권은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문제있고

[물건채속 상] 본안 심결 확정 이후 다시

큰일한 심판에 제가미 심판권 못한 불이타



[항공 캐시]은 제한 되는 데 바로 일사불리 원칙 때문이고

[결정] 직으로 불안 심플 결정은 항구적으로 관건항과

(2) 검토

일사불리하게 유예식 9권 제한이 많으므로 이론 고려한
취재가 타당하다

3 2018학 11360 관건항 의미

(1) 어떤 모든 관건항 의미 - 동일성, 동일성.

2018학 11360 관건항은 관건항 동일성 관련 취재이다

(2) 취재

[동일성, 동일하게 제정 됨]은 法 140조에 따라
심결 시 까지 수정 가능하므로 심결 시 까지 지켜야함

[2019학 2234 관건항 의미]는 불안 심플 항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보기를 내용으로 이의 제기 하기 싫다

(3) 검토

法 140조 2항 시 해당항 동일성 관련 근거 여부는
심결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건항 검토 - 모든 업무

[불안 심플 항구성]는 법조 안정성과 관련 보장 항구성

[관건항 관련 근거]는 절차권 보장 심결 시로 보므로

이에 모든 업무

II 실문(2)

6.5

1. 법/632 조 의미 취지

(1) 의미

항원인 심결이 강하심결의 경우 일4부 개리
호의를 배제한다

(2) 취제가 실4할 취지

일4부 개리는 궁정결 궁극 봉리를 가함으로 강하
심결 개리 이미 조항 권고 할 수 있다.

2. 강하심결로 불능되는 적용 범위

(1) 문례질 - 문리가 부가된 경우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량한 문례를 제출함으로써
본안 심결이 하는 전사 강하 심결 조항 문례조항

(2) 문례 취제

유량한 문례가 제출되었는지 본안 심결을 하는 전사
법/63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바 있고

(3) 최근 취제

1) 개본

법/632 조의 기원은 강하심결은 한 경우 일
4부 개리 호의를 제한 하고 있다

2) 배정

기초에 강하심결로 본안심결 달리 양은 것이

대하여 권리행사 시기 입법은 동시 배제 한 것이냐

3) 공리가 부가 된 경우

공리가 부가 된 경우 일나복 재리 기록은 파악
 하기 위하여 실질의 기록된 수필과 기록된
불사키하게 수필만 듣기에 대해 불합치 한다

4) 공인 해석

法 163조 5항이 공인해석상 각하심판의 경우
 당연히 배제 되기, 불합치 사항이 기재 없다

5) 확장 해석 제한

法 163조 5항은 수필기 받은 확장이므로 이를
확장 해석 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

6) 결론

수필을 번복할수 있는 유권한 듣기자 기록 기재는
기 불합치 후 각하 심판해도 여전히 일나복개
량의 기록에 따라 효력 배제 된다

[4] 결론

法 163조 3항에 반하지 않고. 확장해석 제한
해석 가능한 위수제가 타당하다

[5] 결론 - 모든 각하심판은 ^{결론} 대상으로 함

法 163조 5항은 유권한 재판으로 모든 각하 심판은
대상으로 적용한다

18

문제-3

2 실문(1)

3

1. 이항 운동 발생의 구성요소 사례

1) 물리

이항 운동 발생은 물리 발생은 물리를 구성요 가진다

2) 용도

물리에 특정 용도를 부여한 것이 이항운동 노면이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다

2. 양의 기권의 구성요소로 의미 체계

(1) 양의 기권의 의미

양의 기권은 불발이 운동 발취하는 기권의 설명이다.

(2) 양의 기권 사례비 구성요소 목적

양의 기권은 2사례로 구성요소 목적이 없이 양의기권
한정 결과는 특정 형이상 불의 행라

(3) 용도 한정으로 의미

양의기권은 이항 운동을 한정하는 것으로 2
의미를 가지며, 이항 운동은 특정하기 위해 쓰인다

(4) 양의 기권이 널리 알려진 경우

양의 기권이 널리 알려진 경우 용도를 대신하여
용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쓰이기로 한다.

II 실문(2)

6

1 음계림 - :법29조2항. 관행.

특허 발명은 기술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의 발명으로
부여 할게 실시 하기 위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임. 이를 살핀다

2 발명 X가 이익을 얻는 발명 여부 (각각)

발명 X는 백열전 램프의 양극각각 "코실"에 대한
개량형 기구 "우로" 가린 이익을 얻는 발명이다

3 이익을 얻는 발명 인정 관한 방법(1) 효과 예측 방식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공리된 경우 그에 대한 효과
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관행에

(2) 효과 확인 불요 방식

이익을 얻는 발명기 인정을 산정하는 알리 개량 발명
의 각각 공리된 효과 확인은 불요하다고 하겠다

4 결합 발명 인정 관한 방법 방식

결합 발명이 경우 각각의 발명기 각각으로 각각

하리 상업 발명기 개개 상용과 같은 것

상업 발명기 크기 양기 등에 있어서 관행 한다

사후적 고찰 하면 안된다

5 사안의 경우

(1) 선행발명 1 내용 - 동기, 양식

선행 발명 1은 발명 X가 "기장병 선택적 억제" 관련 하위 효과를 충양할 수 없기만 예측 가능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선행발명 2 - 효과 예측 자료

선행발명 2는 기장병 증양에 비공식적인 불충 장적인 여러 개로 분별적 각각 완전히 충양 되지 않고 기장병 치료 효과 예측 가능하게 한다

(3) 치료 효과 확인 여부 (소극)

선행발명 1 과 2는 기장병을 극강강으로 치료 하는 효과 확인 할 수 없다

(4) 쉽게 실시 가능 (주극)

선행발명 1 의 동기 양식와 선행발명 2 의 효과 예측에 관련 자료 이용 하여 기장병 치료 효과 쉽게 실시 가능 한 것 으로 보인다

(5) 소결 - 사후적 고찰 고려시

사후적 고찰 고려 하지 않고 쉽게 실시 가능 한 것 으로 보인다

6 결론 - 진보성 부정, 치료 효과 확인 불도

발명 X는 치료 효과 확인 없이 진보성 부정 된다

IV 실문(3)

1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이 별명 구성으로 식별 (각각)

(1) 권리 배제제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이 특가된건수 용도로 한정될 뿐
별로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2) 권한 다수의 점 배제제 - 식별 인정.

이 맥락의 별명 별칭을 문구에 기재된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은 이른 개별처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
과 과보증을 고려하여, 슬롯을 한정 하는 것으로
구성요소로 의 식별을 인정 하 있다

(3) 전항 소의견 배제제 - 식별 부정

특허용법과 특허용법기 별칭은 용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면 막리기전과 마찬가지로 용도 한정
하는 권리의 의미는 가진다고 했다

(4) 점포.

기술 분야 특성상 용도가 중화되고 할 덴에 특허
용법과 특허용법기 개라 별칭은 용도와 같아
로 영 오스 각각 있다고 볼 수 있음

(5) 소질 - 구성요 구성 인정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은 별명 구성으로 식별 있다.

2 새로운 기약문은 특가 특허 인정 거부 (제한적 각주)



(1) 새로운 의약용료 부가만으로 특허 불인정 체계

새로운 의약용료 부가뿐만 아니라 사실만으로 특허로 인정하게 할 수 없다.

(2) 의약용료 부가로 특허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체계

의약용료 부가로 기술분야에 특정한 공익을 가져다 주며, 부가된 물질로 인한 기술자체의 이질적 효과나 효능에 대한 기대를 초월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질료 - 신규성, 진보성 관련 필요.

새로운 의약용료 부가는 3선으로 부가된 것이어서 일정한 명과 야한 가치로 신규성 진보성 관련 요건도

(4) 소결 - 별도 관련 필요

의약용료 부가후 현저한 효과를 특이한 작용효과가

IV 실문(4)



1. 총제적 - 진보성 - 신규성 2항

의약 특허 용법 별명기 기술분야 특성을 위한 진보성 유무로 판단해 본다.

2. ^{특이}발명 추가 의약 특허 용법 별명 여부 (적극)

발명 주는 백혈병 특허를 경위 용법을 통해 용도로 기대하는 의약 특허 용법 별명기가



문 제-4

I 실문 (1)

3

11.5

1 문리검 - 심결 확보소송 심리법1062

심결 확보 소환에 대하여 과백의 소위 판정
가능 한지가 문제 된다.

2 준용규정 - 행정소송법 62 조 2항

심결 확보 소환은 행정소송법 62 조 2항 준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3 변론규칙 적용 거부 배제

민사소송 법은 원칙적으로 준용하는 이상 변론규
칙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4 과백 거부 배제

심결 확보 소환에 있어 변론규칙은 기본으로
이상 과백 또한 가능 하다

5 과백 불인정한 경우 배제

① 특히 불응에 권보성판정이 있거나 위법 및

② 권리 범위 속부분 사실심 관련 사항이
하더라도



6. 과백이 가능한 경우 배제

특히 불명이 이러한 구성으로 되었는지 ③ 권리
되었는지 ③ 권리를 인의 문은 과백으로 가능하다고
한바 있다

II 실문(2) 8.5

1. 재판상 과백 성립 여부 (직극)

(1) 재판상 과백의 의미 및 요건

재판상 과백은 다른 기판에 반으로 공여부 주장
과 일치하고 과기에 불리한 구성에 관한
권으로 과중 구성을 제한한다

(2) 구성요소를 인정하는 것이 구성요건 여부 배제

주요사실이란 법규 기준에 따라 법원 후자로
발생 시점은 원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는지
구성요소 즉 특히 불명의 구성에 해당 하는
사실은 권리 범위 용도에 대한 법률 효과의 발
생 시점을 모든 사실에 해당 한다고 했다.

(3) 사안의 경우

[주요사실]로 구성 C의 구성요소임을 인정하고
[일치된 사실]로 A의 감정 실험 의도와 일치하고 있기
[불리한 사실]로 구성 C의 구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실험에 실시 시 개선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적으로 존은 권으로 그에 대한 과백했다

(4) 소결 - 과백의 논점

과백의 논점으로 당사자와 법원은 과백의 내용에 구속된다

2 과백 취소 가부 (소3)

(1) 과백 취소 방식 (각급)

과백은 명시적으로 범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취소 가능 하다, 사망은 존이 명시적으로 과백을 취소 하고 있다

(2) 과백 철회 제한

이후로 소용 행하는 실차 양과라 상대명 신키 보호를 위해 철회 제한된다. 존의 과백 철회는 제한 되어 있다

(3) 과백 철회 제한의 예외 사유

[대심4위 5호] 형사 처벌 받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의사자 권리 무권하게 미관 형성오항의

[항오 필 반영설] 당사자가 항오와 실제적 권설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음영하에 철회 가능치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 동의 은로 권리 철회 자동 하라, 이케는 레기하기 안양하는 사실은 부러

[정권권] 민사 소송법 94조에 기해 정권권 행사 가능치



(4) 예외 사유 중 창조와 반권실의 경우. (소극)

1) 관련 체계

특정도에 관한 강령 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수정요임을 인정하기 곤란 경우, 과백 청구 할만한
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 하더라도 반권실시
가능하지 않은 것

2) 사양서 경우

[창조] 여부 상 이미 강령 신청 결과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특정 임의 인정 어렵고
[반권실]에도 반한 것으로 보아 어려우므로
[소결] 청구 제한된다.

(5) 다른 예외 사유의 경우 (소극)

[개방사유 5호]는 甲이 청사 회보등이 없고
[상대방 2호]는 甲은 권리 법에 속하는 주관적이고
[정관권]은 乙이 개리인으로 소권 행사경 없다
[소결]로 乙은 청취 제한 예외 사유가 없다.

(6) 소결 - 乙 과백 취소 불가

乙은 청취 제한 예외 사유가 없음으로 乙의 과
백을 취소 할 수 없다.

3 결론 - 침해성 인용 관할 대상.

분류상관 기점을 권리 남용 아니고. 과백으로 권리 법에 속해, 인용에 해당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135

I. 선택 번

1. 원사적 권리 취득 문제 - 甲의 권리

(1) 법 33조 함꼐

법 23 조항 각목을 살하여 전항에게 특권 발생이야 한다.

(3) 양수배신행위의 성립

甲이 양수배신행위를 직접 행한 바 특권권리인 해당 한다.

(2) 발명의 의미 (제1항)

발명을 한 자로 각사상의 창작성 실질적인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

(4) 제3자에게서 성립

甲의 공동권리 발명권리인 甲에게 특권을 받을 수 없 는 권리 를 승계 할 수 있 다.

(5) 선점

원사적 권리 취득 주체 는 甲 이 다.

2. 특허권 이전 가능 (꼭)

(1) 법 99조 함

특허권은 양수권변 타인에게 이전 할 수 있 다.



(2) 사안

부은 특허권을 지게 이전했다.

3. 부의 출원 적법한가

(1) 부원리나 출원인 (사안)

특허권을 이전계약을 통해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인은 타인 권리취득자가 아니므로 양도인의
출원은 제 33조 1항 2호를 위반한 바 없다.

(2) 사안

부은 지게 이전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이전한 바
부은 타인 "권리취득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의 출원은 부원리나 출원인 하당한다.

4. 출원

부의 출원은 부원리나 출원인 출원은 "부적법"하다



II. 설문 2번

1. 주이 특허권자인지 (특)

(1) 법 103 1항

특허권을 계약의 통에 어떤 경우 특수한 발명인이다

(2) 사안

주은 아인받은 후 특허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바
"특허"이 부록제하여 특허권이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이 침해한 것인지

(1) 법 943

유리한 특허권의 보완하기 내기에 입찰의 실시하는
경우 관련권이 있거나 등록제하여 있거나 권리범용
아니라면 침해 해당한다

(2) 주이 실시권자인지 (특)

(1) 사례

양도계약 이후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다만 양도인은 "실시할 권리" 권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

- ① ~~그는~~ ~~부인~~ ~~이전계약은~~ ~~동기~~ ~~특허권을~~ ~~이전받았다~~
- ② ~~대반~~ ~~그는~~ ~~특허권~~ ~~이전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 ③ ~~부인~~ ~~의~~ ~~의사~~ ~~는~~ ~~그~~ ~~이~~ ~~이전계약~~ ~~을~~ ~~실수를~~ ~~시켜~~ ~~서~~
~~대반~~ ~~이~~ ~~권리~~ ~~를~~ ~~상실했~~ ~~으므로~~ ~~그~~ ~~의~~ ~~가~~ ~~치는~~ ~~실시권~~ ~~이다~~
- ④ ~~그~~ ~~의~~ ~~실~~ ~~수~~ ~~는~~ ~~적~~ ~~법~~ ~~하~~ ~~여~~ ~~부~~ ~~인~~ ~~의~~ ~~특~~ ~~허~~ ~~권~~ ~~을~~ ~~침해~~ ~~하~~ ~~지~~
~~않~~ ~~다~~.

(3) 소결

그는 실시권자이므로 그의 실수 부인 특허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의 가치는 실시권자이므로 그의 실수는 적법하여
부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II.

선출 3번

4.5

1. 무연심판은 청구권이 타하지 (23)

(1) 무연심판 타하지, 청구 (1332)

(공상) 타하지 앞 특지를 선출사실 심판이다.

(2) 정복 - 이의신청이 (411)

① 특허권의 권리주체로 인해 법원심 불복할 권리 가리 타하지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② 특허심사관은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1332 1항)

(3) 무연사유 - 부원외의 출원

특정 수리 계약의 이행으로 타하지 권리주체가
타하지 바 타하지 출원은 부원외출원이 타하지

(4) 선출

특허심사관 무연심판은 청구권이 타하지

2. 일사부재리 원칙 (50)

양 ↓

(1) 타하지, 청구 (1332)

(선출) 타하지 앞, 타하지를 청구하기 위해 동일심판, 동일사실,
동일주체를 가진 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2) 불안심청 신청사실 (411)

(선출) 국민의 타하지를 권리를 타하지에 타하지로 심판을
타하지 법원의 노력의 무효를 청구하기 위해
1332 2항에 따라 타하지에 타하지할 수

근으로 심판자를 기근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동일성, 동일성 판단방법 (외국)

① 본인으로서 심판자를 받거나 받은 대세료 인에
제과와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② 심판의 효력을 심판까지 연장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 102 조) ① 심판자를 기근으로 연장된
사실, 증거를 기근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소결

본인으로서 행사하기 위한 바 양식까지 기판이 아니다.

3. 중복심판 기판부 (중복) 이거

(1) 특허법 제 102 조

심판의 효력, 기판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심판제척 효 동일한
심판은 판정할 수 없다

(2) 심판 제척 중 판단방법 (외국)

양식까지 판단방법 변형은 "대세료" 인에 제과와
권리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중복심판이기
양식까지의 취지를 인해 동일시하기인 "양식이 다른
바" 중복심판이므로 양식을 기근으로 판단
해야 한다

(3) 사안

기판성을 판정해야 한다.



(문제-2)

11.5

I. 선택 1번

5.5

1. 농어-양식업법 (법 1632)

상업적 목적,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동일성판, 동작성, 동작성을 이유로 한 수 있는 바 판정방법 리어가 존재한다

2. 2009년 234 조항법회 판결 판례

(1) 사실

국인의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제정하는 상업적 목적 법원의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법 1632 문헌작성 고도해 해석하는 것은 국인의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제정하는 본인작성 목적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정한다.

(2) 결론

① 국인의 재판청구권이 이유로 제정하는 것은 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상업적 목적을 부여하는 법원의 판정방법을 무효로 인정할 것은 판정방법이 판례가 없다.

(3) 선결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본인작성 목적성을 판정방법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11360 판결 판례(1) 침해

① 심판의 청구의 범위는 불가침하나 권리 범위를 가늠하므로 (특 14조 2항) 심판을 기준으로 행된 사실의 증거 이유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전합합체를 통해 ~~판례가 행된~~ 이르는 "특허권" 인바 제3자 권리행사를 제외하되 가법 이므로 동일 사실, 증거 판례는 전합합체 판례와 다르게 어떤 심판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2) 권리

특 14조 2항에 비하여 청구권을 상회하지 않도록 수 있으므로 "심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일 동일 증거 부분을 판단 침해가 타당

(3) 권리

"심판을 기준으로 동일 사실 증거 판단 한 것 은 적법 하다

4. 판

두 침해 판 적법 하다.

I. 실문 2번

6

1. 실용 - 法 1632 판권

특허심판이 각하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복종하지 않는바
각하심판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불응하는

2. 각하심판으로 복수 및 많은 경우

(1) 대리의 경우

과거에는 각하심판이 되어 당사자나 대리인도 복종하지 않는
다툼이 존재했지만 실용 1632 판권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판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복종하지 않는다.

(2) 동일물의 의미 (제131조)

당사자나 대리인의 권한을 가진 동일물은 동일물 2
개체 뿐만 아니라 동일물이 특허권을 변경할 수 있는
한정 "유리한 출자 부가된 많은 경우 동일물의

(3) 본인이 선행된 권리 (제131조)

특허권을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판례상에서
"본인이 선행된 권리"가 인정된다

(4) 본인행위처럼 해석 불가 (제131조)

본인행위처럼 등의 각하심판이 나온 것과 본인이 선행된
것과 같이 본인은 각하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본인행위처럼"을 해석하는 방식이므로 본인행위처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5) 소결 (제3회)

등업이인 판단하기 위해 특정사항을 변형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측면이 판단하는 데 있어 본인판단과
같은 판정을 할 수 각사항을 변형하는 익사에
이 관련 판단할 수 있다.

(6) 검토

~~법 63~~ 조 제1항은 상기의 뜻, 목적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동일성, 동일성을 이루고 상당 판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판단 변형 특정사항을 변형
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본인판단 판정 관련
해석에 제3회 특정, 형이 제 여기
관계 가 판단 유리한 등업.

3 결론

① ~~법 65~~ 조 제1항에 각사항은 익사가 관련 판정
한 이가 유리 의 각사항의 특정 판정
같은 판정 수 각사항을 변형하는 각사항 판정
변형 해석에 관련.

(끝)

<문제-3>

J. 셋 번

3

1b

1. 의약품의 발명 의미

의약이 가진 발명성으로 신약성 이용가능성을 가진 발명시 해당된다.

2. 구입성 (실행성)

의약품의 발명 구입성은 물리적 것보다 기술적 것인 의약품이 해당된다.

3. 약업자인 구입성 의미를 가지는 것(1) 실행성

약업자는 물리적 의약품의 구입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의약품의 불가분적으로 내부된 속성으로 따라 약업자는 "구입성을 확인하는 기술적인 구입성으로

의미를 가진 발명 약업자 구입성은 의미를

가지는 않는다.

(2) 사안

특히 발명 X가 가진 물리적 의약품을 확인하는

기술적인 구입성을 의미를 가진다.

선형방정식의 결합이 용한 기법이다.

5. 사인

(1) 암시, 풀이 순서

① 선형방정식 1개 위임방식 선택후 위임하면 X의 식이
A 형태가 되어 "X의 값을 찾기"를

② 선형방정식 2개 X가 위임방식 풀이 가능한 위임방식
"중요한 위임" 하다는 것은 풀이 방법을 "암시"로
사실 바 있다.

(2) 치환법이란 무엇인가

선형방정식 1, 2개 치환법이란 위임방식 풀이
후의 방정식 X 값을 치환법이란 풀이 방법

(3) 용인 순서

용인 기법이란 선형방정식 1, 2를 풀이 "정답은 X"
같은 것이므로 방정식 X 용인 순서가 관계없이
가능하다.

6. 결론

① 치환법이란 위임된 풀이 방법 ② 방정식 X는 관계없이
가능하다.

II. 선택 3번

1. 특허방법, 특허양도 규정인의

(1) 사례

계약으로 받거나 새로운 특허방법, 특허양도를 부가한 것
 "새로운 발명"을 부가한 것이고 새로운 발명을 받은
 것이 부가한 것은 새로운 발명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특허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특허방법, 특허양도를 부가한
 물건에 대해 판단하여 새로운 발명을 부여받은 것은
 판단해야 하므로 특허방법, 특허양도 규정인의
 해명한다.

(2) 사실

발명 등이 새로운 특허방법인 것은 권리특허 방법
 시행한 것은 "새로운 발명"을 부가한 것은
 발명 등의 규정인 해명한다.

2. 새로운 발명이 부가되면 특허권은 있는가

(1) 사례

새로운 발명이 부가되면 곧바로 특허를 받을
 것이 아니라 "특허대상"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사인

특히 일명 X이 권리특어라는 사인 계약용기가
 된 중 그 외제를 특허법상 부여받은 권
 아므로 신성, 권양등 다른 특허권을 한루가
한다.

IV. 실용 수반

3.5

1. 권양 양행 표(1) 계약용기 표 (신성)

계약용기에서는 사인 표, 더 신 표를 표
 위해 노력 표 표이므로 사인 표, 표
한루가 한다.

(2) 계약용기 표 (신성)

계약용기 양행 표를 표하기 위해 이런 표나
표 표 표 "계약용기" 표를 표 표.

(3) 계약용기 표를 표하는 표 (신성)

계약용기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사인(1) 계약용기 표 표

특의 발명은 절대특이성을 갖지 못한다. 인간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인간에 특유할 수 있는
"현저한 현저"를 가진다.

(2) 구성의 본질적 특질

따라서 현저한 현저로 인해 특의 발명은
구성이 특질된다.

(3) 본질

발명은 본질이 인정된다.

<끝>

<문제-4>

11.5

I. 섯 번

3.5

1. 형 - 상벌규정 (법 186)

살인범은 큰가를 뺏아가기 위해 특히법원시 상벌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적당하게
문책된다

2. 형량소형법 80 조

형량소형법 80이 따라 판형소형법 70은 문책된다

3. 변론주의 적용

(1) 여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의 증명책임, 과실의 책임, 증거를
제출할 부과하여 법원은 여의 경우로 판단하여
사실과 증거에 대한 책임이다

(2) 적용방위 (제 111)

적용방위는 주원사실이 아니라 주원사실 판단기준
법기근속시 따라 법률과 실체법상 적용한 법령
사실은 여의한다 방위하는

(3) 자백 가능한 경우 (제 112)

과실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대한 법규판정
위 증거는 과실의 여의가 되기 한다



(4) 사인

실은 II까지 편입된 바와 같이 어떤 권리만을 부여하는
사실이므로 과반이 가능하다.

II. 실은 2번. 8

1. 과반의 과반의 (적용)

(1) 의의, 취지 (판사총합 2882)

과거 권익침해에 대해 과반에 대한 권리만을 관
할 수 있는 의미이다

(2) 원

- ① 변론이나 변론비기일시
- ② 상대방의 권리 침해
- ③ 불안
- ④ 권리침해를 구경해야 한다.

(3) 자신의 과반 (판례)

과반은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법률판단 때
동한 과반을 할 수 있다.

(4) 어떤 권리를 부여가 과반의 (판례)

과거가 어떤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구경하는 것이
이른 사실관계에 해당하지만 "어떤 권리를 부여"는
은 의미가 사실상의 사실에 대한 법률판단의 권리가
불가능하다.

(5) 사인

2이 항변을 하는 경우 과반 역시 독자별명 제의



구입을 받을 제라야라 나머지 구입을 할 때
할 때는 관습 "사실" 이므로 권리 관습 외에는
해당한다.

2. 특허가능성의 (특)

(1) 객체 특허 할

객체는 어떤 상업적의 법적의 구체 특허가
가능하다.

(2) 특허 가능 한 것

① 법에 허용 5년이 제정한 형식 제정을
타인의 행위로 객체한 것 ② 상업적의 "등"을
받은 것 ③ "특"한 것 ④ 매인 행위인
것 객체 특허가 가능하다.

(3) 상업적에 등한 것의 (예외)

행위의 등한 행위인 것 상업적에 등한
행위한 것 등한 것은 불하다.

(4) 사안

1) 특의 특 (특)

특이 특의 특에 특한 바 특으로 특은 안은
특한 특하다.

2) 특의 특 (특)

특은 특의 특에 특한 바 특은 안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동 개된 것 관하여
 B의 경우 C의 경우 양자 모두 관하여 양자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양자 구분 가능"

3) 소결

과잉사유 및 예외가 부수적으로 주어 제 9항
 변칙인사시 구경 (의 관할 반복하여 과잉
 관하는 것은 불가능함.

3. 결론

① 과잉사유 과잉하여 배양하고 ② 구분가능함.

<끝>

과잉사유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